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1. 24 선고 2021가단553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330646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1. 24 선고 2021가단55361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11. 10.

판결선고 2021. 11. 24.

주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15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1,611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31,6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0. 8. 15.1)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1,6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4495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. 8. 29. 위 법원으로부터 ‘C는 원고에게 50,905,7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어머니인 D은 2020. 3. 9. 사망하였는데, 그 상속인으로 피고, C를 포함하여 자녀 4인이 있다.

다. C 등 위 4인은 2020. 8. 15.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다음부터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(다음부터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0. 8. 24. 접수 제56888호)가 경료되었다. 그 후 피고는 2020. 8. 17.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,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5,000,000원, 채무자 D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그 피담보채무액은 168,555,129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2호증의 각

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인 1/4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부분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,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50,904,754원을 초과하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인 126,444,871원(= 위 295,000,000원 - 위 168,555,129원) 부분 중 C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1,611,000원(= 126,444,871원 ÷ 4, 원고 주장에 따라 1,000원 단위 미만 버림)이므로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31,611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,6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인 1/4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부분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고, 지연손해금율을 12%로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.

다. 피고는 C의 피고의 기여분, C에 대한 생전 증여를 감안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주장하나,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차윤제

별지

목 록

부산광역시 수영구
아파트
[도로명주소]
부산광역시 수영구
19층 공동주택(아파트)
3층 호 83.85㎡

1) 상속재산분할협의서(갑 제6호증의 2)에 기재된 날짜에 위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, 이에 따라 기재하였다